

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(제31조제1항 관련)

1.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가.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·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3호	1억5천만원
나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4호	1억5천만원
다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5호	2억원
라.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6호	1억5천만원
마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7호	1억5천만원

2.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

$$\text{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(배럴 또는 톤)} \times \text{건설단가(원/배럴 또는 톤)} \times \text{기준 저장시설 미달 일수}/365 \times \text{연간 대출금리}$$

- 가.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 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 용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.
- 나. 건설단가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 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비축시설 중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유비축시설(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)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.
- 다.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는 저장시설 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한 날까지로 한다.
- 라. 연간 대출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.

3.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

$$\text{기준비축 미달 물량} \times \text{국내 평균 수입단가} \times \text{비축의무 불이행 일수} / 365 \times 60 \\ \text{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(기한부 어음 금리)}$$

- 가. 기준비축 미달 물량은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 물량을 말한다.
- 나. 국내 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프로판의 국내 평균 CIF (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)를 적용한다.
- 다.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는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첫날부터 제28조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.
- 라.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(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말한다)은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8조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을 적용한다.